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 .	
연 월 일	(제	회)

의 결사항

교 원 의 지 위 향 상 및 교 육 활 동 보 호 를 위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35호, 2023. 9. 27. 공포, 2024. 3. 28. 시행)됨에 따라, 종합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사안이 중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교육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제출 및 시행계획 수립·시 행 절차(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2조의3)
  - 1)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2)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시·도교 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계획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교 원보호공제사업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안 제11 조 신설)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를 한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 간 분리조치의 방법 •기간·장소 등(안 제17조제2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분리조치를 하기에 앞

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내에 분리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에서 분리조치를 달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안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교육감이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활동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

마.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안 제20조 신설)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 또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수행자 등에 관한 비밀의 범위(안 제24조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비밀 누설로 인한 교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의 범위를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

교원에 대한 개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시 개인별 발언 내용 등으로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3. 6. ~ 3. 8.) 예정

대통령령 제 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제27조로, 제2조의3을 제18조로,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제 2조의4를 제19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 1. 종합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 하는 사항
  - 4. 그 밖에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 항이나 표기 등을 단순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의 제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등)"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 중 "법 제14조의2 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의3.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종전의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형법」 제2편제25장"을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안이"를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사안이"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2조의4)의 제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 5항 단서"를 "법 제20조제5항 본문"을 "법 제20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제19조(종전의 제2조의4)제3항 중 "법 제15조제5항 단서"를 "법 제20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

- 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제1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9조의2를 제10조로 하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원"을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학생"을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한다)의 유형별 현황
- 제10조(종전의 제9조의2)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제9조의3을 제21조로, 제11조를 제22조로, 제11조의2를 제25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

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있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시·도교권보호위원회"로, "7명 이상 10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8조제 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

-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 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2의2.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 장이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 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 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 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

다.

제17조를 제26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 된 경우
  -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정하 는 범위에서 달리 할 수 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
     의 의사를 확인할 것
  -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해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

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공제약관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종전의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3제1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18조제1항제7호"를 "법 제25조제2항제7호"로한다.

②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받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

다.

제23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을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17조제1항"을 "법제29조제1항"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 정
    - 나.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 회의 조치 및 분쟁 조정
  -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 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25조(종전의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2) 제2항 및 제4항 중 "법 제18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
  - 5.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 6.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제27조(종전의 제18조)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9조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 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인	]
ام الحالية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1항	100	150	300
법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2				
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				
Ŷ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u>관한 종합계획 등) ① 법 제14</u>
	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합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
	<u>항</u>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
	용에 관한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
	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이나 표기 등을 단순
	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
	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위한 시책 등) <신 설> 관한 시행계획) ① 특별시·광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법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 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①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도교권보호 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 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 립·시행해야 한다.

- 1. ~ 3. (생략)
- 4. <u>법 제14조의2제1항</u>에 따른 법률 상담
- 5. (생략)

<신 설>

<신 설>

6. (생략)

-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제 보고 사항)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형법」 제2편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2.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1조제1항
5. (현행과 같음)
<u>5의2.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u>
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의3.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
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
<u>하</u>
6. (현행과 같음)
<u>]18조</u>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u>법 제20조제3항</u>
<ol> <li>「형법」 제2편제25장(상해</li> </ol>
<u>와 폭행의 죄)</u>

2.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 한 조치) ① 법 제15조제5항에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 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1.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 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 이라 한다)이 정한 전문심리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 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가.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 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 부장관

4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사
	<u> 안이</u>		

제2조의4(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0조제5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 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피 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나.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②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 1.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 (생 략)

- 2. (생략)
- ③ 관할청은 법 제15조제5항 단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
,
1. 법 제20조제5항 본문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5항 단

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 지해야 한다.

## ④ (생 략)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저 관할청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6조 전 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서
④ (현행과 같음)
네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underline{\mathbb{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
• 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
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u>수 있다.</u>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② (현행과 같음)
<u>세10조</u> (실태조사) ① <u>법 제16조제</u>
<u>1항</u>

다.

-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현황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

   <신 설>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

- 1.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이하 "교육활동 침 해행위"라 한다)의 유형별 현 황
- 2. ---- <u>교원(이하 "피해교원"이</u> 라 한다)-----
- 3. 법 제25조제2항----- 학생(이 하 "침해학생"이라 한다)----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 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 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제10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 건) 관할청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u>교원치</u> 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5. (생략)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

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u>할 수 있다.</u>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
육) <u>법 제24조제1항</u>
<u>.</u>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
건) 법 제29조제1항
교육활
 동보호센터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
· 1. ~ 5. (현행과 같음)
<박 제>
<u>\                                    </u>

<u>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u> 할 수 있다.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 2.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3.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이내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 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등 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 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 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 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 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 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 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 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 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 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 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제7

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
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
<u>야 한다.</u>
③ 제2항 후단
<u>④</u> 제3항
<u>⑤</u> <u>제3항</u>
및 제4항
·.
<u>⑥</u> <u>법 제25조제2항제7</u>

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1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5. (생략)
  - ② <u>법 제18조의2제1항</u>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u>법 제18</u> 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u>법 제19조</u> 제1항에 따른 시·도교권보호 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u>호</u>
	,
제	<u>25조</u>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
	사) ① <u>법 제31조제1항</u>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제1항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31조</u>
	제1항
	<b>.</b>
제	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u>시·</u> 도교
	권보호위원회

- 을 포함하여 <u>7명 이상 10명 이</u> <u>하</u>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互選)한다.
- 1. ~ 4. (생 략)
-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6. ~ 8. (생략)
- ③ ~ ⑥ (생 략)
-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 저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19조제 1항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2. (생 략)

<u>10명 이상 20명 이</u>
<u>ŏ</u> }
②
<u>.</u>
1. ~ 4. (현행과 같음)
5
<u>ठ</u> ो-
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
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
<u>법 제18조제1</u>
항제2호
1.·2. (현행과 같음)

### ②・③ (생략)

-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2 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 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 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 람
  -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 ②·③ (현행과 같음)
- 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 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 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 람
-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
-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 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 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 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 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 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 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 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 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 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 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 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 청하는 경우

-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 다.

<신 설>

- 2의2.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 오
- 3.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의 기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착·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착·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제1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석·기피 및 회피 등)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9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석·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u> 준용한다.</u> <신 설> 준용한다.

-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 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 우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

     원이 분리된 경우
  -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분리조치를 다음 각 호 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

     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 고의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신 설>

<신 설>

<u>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u> 노력할 것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2 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 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 교육청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 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공제약관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 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

 원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

# 보에 관한 사항

-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 나.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및분쟁 조정
-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 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 다.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

     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 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 다.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 의 보호조치
  -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

     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4.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6.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 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 호자 참여 조치
-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 료의 부과 · 징수
- 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 5.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 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 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교육활 6.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 료의 부과 · 징수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35조제1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87